

의안번호	2213085
의 퇴 인	추경호의원
회 답 일	2025.11.10.
추계번호	25C4949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0조의2 (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과의 연계 관리를 위한 협의·조정 등)	○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.(제2항) 1.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각각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2.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및 요양급여 비용의 변화,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 및 의료급여 비용의 변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 및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3. 건강보험 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등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4.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부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5.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지급 현황 ○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, 심사평가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5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0조의2 (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과의 연계 관리를 위한 협의·조정 등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실손보험과 관련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,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사업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,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중 일부 실태조사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안에 따라 향후 확대될 실태조사의 종류와 규모 등을 현시점에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개정안은 (1)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국민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, (2) 요양(의료)급여 대상 및 요양(의료)급여 비용의 변화가 실손보험의 보장범위와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, (3)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, (4) 실손보험 보험료 납부 및 지급 현황, (5)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지급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함
 -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내용과 관련된 실손의료보험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며, 후행 연구용역의 개수 및 규모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－ 보건복지부는 2020년 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영향 분석 체계화 연구”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발주하였으며(연구용역비 4,000만원),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연구원도 같은 해 “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지급보험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”, “건강보험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분석 연구” 등을 발주하였음
 - 또한,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2023년 9월부터 “비급여 보고제도”를 통해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, 2025년 9월, 「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」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